

제 271 회 임 시 회
2008. 6. 26.(목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송은섭 의원 외 19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17일 / 2007년 12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임시회(2008년 6월 25일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토론, 심사의결(수정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소관업무가 일부 나누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이 지난하고 집행부와 업무 접근이 용이치 않아 상임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함.
- 건설업무의 이분화(행정자치위원회, 건설문화위원회)로 상호 연계적 의정활동이 결여되어 있으며 종합적, 연계적 건설교통업무 추진이 지난함.
- 건설업무(건설, 재난관리, 하천관리, 도시개발, 도시계획, 건축 등)에 대하여 동일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되어야만 일관성 있는 도정건제가 필요함.
- 소방본부는 2002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(현 행정자치위원회)소관 업무임
-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계속되어 도정과 의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음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를 건설문화위원회로 변경(안 제3조)
-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소방본부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(안 제3조)
-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(안 부칙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건설, 재난관리, 하천관리, 도시개발, 도시계획, 건축 등의 건설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문화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소방 본부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부서와 위원회 기능과 역할, 업무량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부개정 예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의 부서 명칭에 맞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
- 개정조례안 부칙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8. 6.25(제2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민경환 의원

나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(2008. 1. 1) 및 전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폐지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
- 소관부서가 조정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법규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.

다. 수정안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 명칭변경(제2조, 안 제3조)
 - 행정자치위원회 → 행정소방위원회
-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폐지사항 반영(안 제3조)
 - 자치행정국 → 행정국
 - 복지여성국 → 보건복지여성국
 - 경제투자본부 → 경제통상국
 - 농정본부 → 농정국
 - 건설재난관리본부 → 건설방재국
 - 균형발전본부 → 균형발전국
 - 생명산업추진단 → 삭제
- 시행일 조정(안 부칙)
 - 2008년 1월 1일 → 공포한 날

7. 심 사 결 과 : “수정안 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발의년월일 : 2008. 6. 25.

발 의 자 : 민경환 위원

□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(2008. 1. 1) 및 전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폐지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
- 소관부서가 조정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법규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 명칭변경(제2조, 안 제3조)
 - 행정자치위원회 → 행정소방위원회
-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폐지사항 반영(안 제3조)
 - 자치행정국 → 행정국
 - 복지여성국 → 보건복지여성국
 - 경제투자본부 → 경제통상국
 - 농정본부 → 농정국
 - 건설재난관리본부 → 건설방재국
 - 균형발전본부 → 균형발전국
 - 생명산업추진단 → 삭제
- 시행일 조정(안 부칙)
 - 2008년 1월 1일 → 공포한 날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행정자치위원회”를 “행정소방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자치위원회”를 “행정소방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자치행정국”을 “행정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복지여성국”을 “보건복지여성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“경제투자본부”를 “경제통상국”으로 “농정본부”를 “농정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건설재난관리본부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발전본부”를 “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문화관광환경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.

안 부칙 중 “2008년 1월 1일”을 “공포한 날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생략) 1. (생략) 2. <u>행정자치위원회</u> 7인 3.~5.(생략)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~5.(현행과 같음)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<u>행정소방위원회</u> ... 3.~5.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행정자치위원회 가. 공보관실, 감사관실, 정책관리실, 자치행정국, <u>균형발전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략) 다. (생략) 3. 교육사회위원회 가. 교육청, <u>복지여성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략) 다. (생략) 4. 산업경제위원회 가. <u>경제투자본부</u> , <u>농정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략) 5. 건설문화위원회 가. <u>건설재난관리본부</u> , <u>문화관광환경국</u> , <u>소방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<u>생명산업추진단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행정자치위원회</u> 가. <u>자치행정국</u> , <u>소방본부</u>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 3. 교육사회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 4. 산업경제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5. 건설문화위원회 가. <u>건설재난관리본부</u> , <u>문화관광환경국</u> , <u>균형발전본부</u> 나. (현행과 같음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<u>행정소방위원회</u> 가. <u>행정국</u> , <u>소방본부</u> 나. (개정안과 같음) 다. (개정안과 같음) 3. 교육사회위원회 가. <u>보건복지여성국</u> 나. (개정안과 같음) 다. (개정안과 같음) 4. 산업경제위원회 가. <u>경제통상국</u> , <u>농정국</u> 나. (개정안과 같음) 5. 건설문화위원회 가. <u>균형발전국</u> , <u>건설방재국</u> , <u>문화관광환경국</u> 나. (삭제)
	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	부칙 공포한 날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행정자치위원회”를 “행정소방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자치위원회”를 “행정소방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자치행정국”를 “행정국”으로, “균형발전본부”를 “소방본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“복지여성국”을 “보건복지여성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“경제투자본부”를 “경제통상국”으로, “농정본부”를 “농정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가목 중 “건설재난관리본부, 문화관광환경국, 소방본부”를 “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문화관광환경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행정자치위원회</u> 7인</p> <p>3.~5.(생략)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공보관실, 감사관실, 정책관리실, <u>자치행정국, 균형발전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<p>3. 교육사회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교육청, <u>복지여성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<p>4. 산업경제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경제투자본부, 농정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(생략)</p> <p>5. 건설문화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건설재난관리본부, 문화관광환경국, 소방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<u>생명산업추진단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행정소방위원회</u> ……</p> <p>3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행정소방위원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……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행정국, 소방본부</u> ……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교육사회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…… <u>보건복지여성국</u> ……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산업경제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경제통상국, 농정국</u> ……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……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건설문화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문화관광환경국</u> ……</p> <p>나. (삭제)</p>